

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08. 5. 19 『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』를 공포하여 2009. 1. 1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 조례에 맞게 해당조문 등을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세대, 모·부자세대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20세이하의 소년·소녀 가정세대,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,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 범위를 확대코자 함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

-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(경상북도조례 제3032호, 2008. 5. 19공포, 2009. 1. 1시행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노인세대”를 “노인이 있는 세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모·부자세대”를 “한부모가족 세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20세 이하의 소년·소녀 가정세대 (단,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,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)
5.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제1항의 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 및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
6.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 사유
제3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“보험공단”이라 한다) 구미시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,000원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하는자로 한다. 1. 만 65세 이상 <u>노인세대</u> 2. (생략) 3. <u>모·부자세대</u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<u>노인이 있는 세대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한부모가족 세대</u> 4. <u>20세 이하의 소년·소녀 가정세대 (단,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,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)</u> 5.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제1항의 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 및 제14호 규정에 의한 <u>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</u> 6. <u>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</u>	○도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확대

관 련 법 령

◎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

제2조(지원대상)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북도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(이하‘대상자’라 한다)로 한다.

1.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3. 한부모가족 세대
4. 20세 이하의 소년·소녀 가정세대(단,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,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)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의 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
6.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